

『역량개발학습연구』 간행 규정

최종 개정 2017. 9. 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대학교 휴먼인게이지먼트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함) 규정 제4조 제4항에 규정된 본 연구소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본 연구소의 학술지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술지 명칭) 본 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의 국문명은 ‘역량개발학습연구’로 하며, 영문명은 ‘Journal of Competency Development & Learning’로 한다.

제3조(편집위원회) 학술지의 편집 및 발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술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둔다.

제4조(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연구소 규정 제10조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추천하여 연구소장이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단, 편집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교외 인사를 2인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연구 및 저술 실적, 연구소 활동의 전문성, 적극성 등을 고려하여 임명한다.

제5조(위원회의 임무) 편집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논문심사규정의 개폐
2. 논문심사위원 선정 및 위촉
3. 게재여부의 최종 판정
4. 편집체제 및 양식에 관한 사항
5. 표지의 색, 디자인에 관한 사항
6. 논문 게재료, 심사료, 분량 초과 논문에 대한 초과비용 책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심사 및 편집에 관련되는 사항

제6조(게재논문의 요건) 본 학술지는 연구소 규정 제4조에 제시된 사업 취지에 적합한 인적자원개발(HRD) 연구의 성과로 독창성이 인정되는 논문을 게재한다.

제7조(발간횟수와 시기) 본 학술지는 연 4회(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게재논문 종류)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은 일정한 주제에 대하여 위원회가 청탁하는 특별논문과 회원 개인이 제출하는 일반논문으로 구분한다. 단, 일반논문은 위원회에서 관장하는 소정의 심사를 통하여야 한다.

제9조(투고 자격)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본 연구소 상임연구원 및 비상임연구원.
2. 박사학위 소지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또는 재·휴학생.
3. 석사학위 소지자,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또는 재·휴학생은 지도교수와 공동

으로 계재가능하며, 기 계재 이후에는 단독으로 계재가능.

제10조(투고 방법)

1. 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회원은 본 연구소의 원고 작성 세칙 및 투고 요령에 따라 원고를 제출해야 한다.
2. 논문의 주제는 인적자원개발(HRD)과 관련 분야로 하며 분량은 원칙적으로 20쪽(연구소 학술지 편집양식 기준) 이내로 한다.
3. 원고에는 반드시 1쪽 이내의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투고한 원고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4. 원고교정이 완료된 논문 원고 1부와 투고신청서 및 연구윤리규정 준수 확인서를 작성·서명하여 마감일까지 전자우편(hrdresearch@cau.ac.kr)으로 제출한다.

제11조(논문의 심사) 논문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수행된다.

1. 논문의 심사는 1차 심사와 2차 심사 절차로 진행된다.
2. 1차 심사는 편집위원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인적자원개발(HRD) 영역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일반적 주제를 우선하여 심사한다. 투고 논문의 주제가 인적자원개발(HRD)영역에서 지나치게 벗어난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 재적 2/3 이상의 찬성으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2차 심사는 매 논문마다 3인의 심사위원으로 실시하며, 제출논문의 주제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해당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학자를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4. 위원회는 제출된 논문의 내용에 대한 첨삭을 집필자에게 제시 또는 협의할 수 있다.

제12조(심사 규정)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3조(논문접수 마감일) 원고접수는 수시로 하고, 당해 호 발간 대상논문의 접수 마감일은 발간 예정일로부터 45일 전으로 한다.

제14조(심사료와 계재료) 논문의 투고 및 계재를 원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심사료와 계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임·비상임 연구원을 제외한 응모자(공동응모자 포함)는 응모 시 100,000 원의 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2. 이전 권호의 논문 심사에서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후 재투고 하였을 경우에도 100,000원의 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3. 논문의 기본 계재료는 200,000원이며,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경우(논문에 "～로부터 지원받았음"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경우) 400,000원의 계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4. 학술지의 인쇄된 쪽수로 20쪽이 넘을 경우에는 쪽당 20,000원의 추가 계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5. 상임 또는 비상임 연구원과 기타 연구자의 공동연구일 경우 기타 연구자의 몫으로 해당 비율의 계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5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역량개발학습연구』 심사 규정

최종 개정 2017. 9. 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술지 간행규정 제12조에 의거하여 중앙대학교 휴먼인게이지먼트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함)가 발행하는 학술지인 ‘역량개발학습연구(Journal of Competency Development & Learning)’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 심사 기준) 논문 심사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정하며, 각 기준은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로 판정 등급을 구분한다.

1. 연구주제의 명료성
2. 국문 및 영문 초록 작성의 적절성
3. 관련문헌 및 이론적 배경 검토의 충실성
4. 연구방법의 타당성
5. 자료 분석 및 결과 제시의 적절성과 충실성
6. 논문의 체계성
7. 논문의 질적 우수성 및 독창성
8. 결론 도출의 적절성
9. 인용 및 참고문헌 작성의 정확성
10. HRD 학문 및 현장적용 기여도

제3조(심사위원회 구성)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논문심사위원의 책임성과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내·외 학자들 가운데에서 논문 발표 실적과 논문의 질이 우수하고, 학회활동에 적극적인 자를 중심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4조(심사 판정) 위원회는 심사위원의 판정을 종합하여 논문의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1. 위원회는 각각의 투고논문에 대하여 최근 3년간 관련 연구 분야의 논문을 300% 이상 발표한 학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2. 심사위원은 다음의 3단계 안에서 논문을 판정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① 게재가: 수정 없이 게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논문 혹은 수정할 내용이 표현, 어휘의 선택, 제시순서 등에 한한 것으로 핵심내용과 무관한 논문
 - ② 수정후 재심사: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논문
 - ③ 게재 불가: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논문
3. 3인 심사위원의 판정에 기초하여 게재여부에 대한 종합판정은 다음과 같이

- 한다.
 4. 위원회의 결정은 인터넷 전자메일을 이용한 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종합판정
제재가	제재가	제재가	제재가
제재가	제재가	수정후 재심사	제재가
제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제재가	제재가	제재 불가	수정후 재심사
제재가	수정후 재심사	제재 불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제재 불가	수정후 재심사
제재가	제재 불가	제재 불가	제재 불가
수정후 재심사	제재 불가	제재 불가	제재 불가
제재 불가	제재 불가	제재 불가	제재 불가

- 종합판정에서 “수정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자의 수정보완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 “제재가”的 판정을 받은 논문도 심사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 수정 후 다시 제출 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해 최종 제재여부를 결정한다.
- 종합판정 및 재심사 결과에 따라 “제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다시 응모할 수 없다.

제5조(심사위원회)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의 책임성과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내외 학자들 가운데에서 논문발표실적과 논문의 질이 우수하고, 학회 활동에 적극적인 자를 중심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6조(개인정보보호)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논문 제출자와 심사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된다.

제7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